

보도 일시	2022. 8. 3.(수) 10:00	배포 일시	2022. 8. 3.(수) 08:30
담당 부서	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	책임자	과 장 전영재 (044-200-4464)
		담당자	사무관 이선덕 (044-200-4466)

공정위, 「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」 개정

- 상품의 안전인증번호 · 유통기한 등 온라인 표시방법 개선 -

-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‘공정위’)는 지난 5월 3일 행정예고한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」(이하 ‘고시’) 개정안을 의결하고,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※ 공정위고시 제2022-15호)

【 주요 개정내용 】

- ① 어린이제품,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 ·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 · 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
- ②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 · 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 · 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
- ③ 리퍼브(재공급) 가구의 하자(瑕疵) 정보,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
- ④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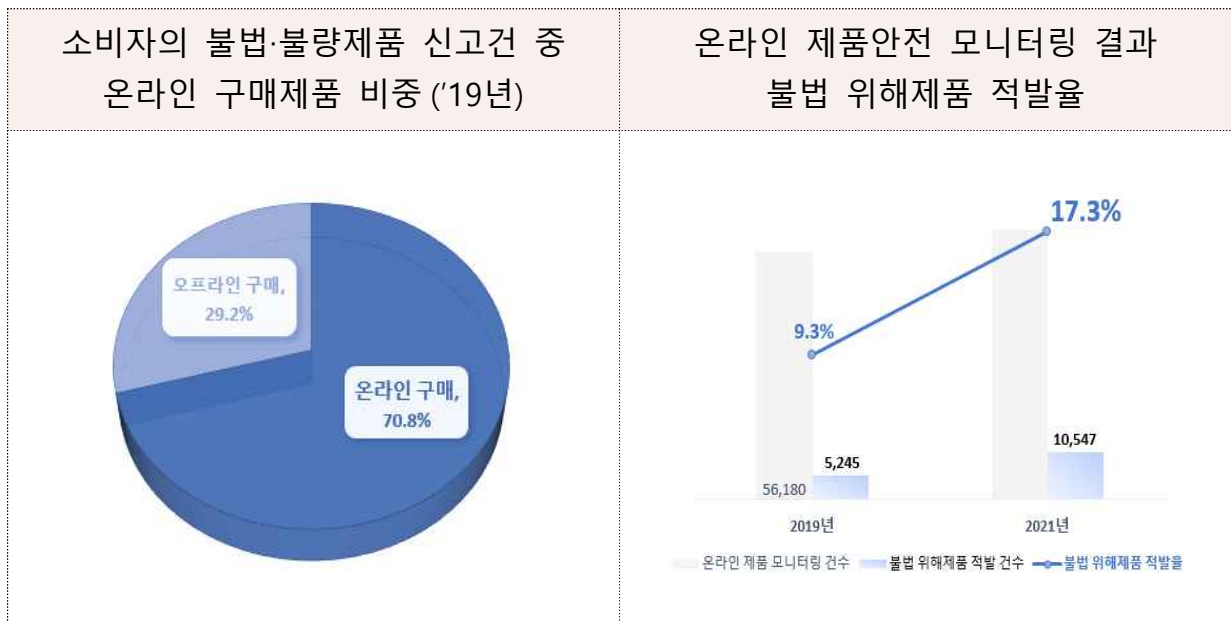
-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,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,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1 개정내용

1 인증·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방법 개선

□ 그간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.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, ①소비자가 불법·불량 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의 70.8%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이었고,
- 국가기술표준원이 매년 실시하는 ②온라인 제품안전 모니터링 건수 중 불법 위해제품 적발건수 비율 또한 2019년 9.3%에서 지난해 17.3%로 2년간 두 배 가량 늘었다.



※ 자료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

→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위해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,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상품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이 상품이 적법한 상품인지, 불법 위해제품인지를 소비자가 곧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.

□ 기존 고시는 별도의 인증·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인증·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,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도 문제 삼기가 어려웠다.

○ 특히, 판매화면에 ①‘인증번호’를 표시하지 않고 ‘인증필’이라고만 표시하거나 ②해상도가 낮아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‘인증서 사진’만 게시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는데,

▶ 이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인증·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지는 못하고 그저 적법한 것으로 ‘간주’하고 구매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되었다.

□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하여 어린이제품,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·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·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.

① 구체적으로는 ‘인증·허가번호’를 ‘판매가격’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,

② 인증·허가번호를 판매화면에 직접 표시(타이핑)하지 않고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때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 안의 인증·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, 소비자가 이를 쉽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의 해상도도 충분히 높이게 하였다.

⇒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인증·허가번호 등을 온라인 판매화면에서 분명히 알 수 있고,

▶ 그 번호를 이용해 관계기관이나 소비자24 누리집(<http://consumer.go.kr>)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안전성과 적법성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② 제조연월일·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

□ 기존 고시는 식품, 생활화학제품,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·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·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.

○ 특히 ‘제조연월일 : 실물상품 참조’ 또는 ‘별도 표시’ 등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았는데, 이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조연월일·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.

○ 한편,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제조연월일·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(△△월 △△일)로 표시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.

- 예를 들어 최근 제조된 상품이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, 현행 고시를 준수하려면, 그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에 표시되는 제조연월일·유통기한을 매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.

□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·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.

① 우선,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 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·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

- ‘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(또는 소비기한¹⁾)이 ○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’

1) 이 보도자료 p.7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,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류 실물상품에 ‘유통기한’ 대신 ‘소비기한’을 표시하도록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류에 대해서도 ‘유통기한’ 대신 ‘소비기한’을 표시하도록 이 고시의 내용도 수정되었다. 보도자료 본문 p.5에 “유통기한(또는 소비기한)”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. 한편 ‘식품류’가 아니면서 재고순환이 빠른 상품 등의 경우, 기존과 같이 ‘유통기한’ 용어를 사용하면 된다.

- ‘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○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’와 같이

▶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(또는 소비기한)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,

②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‘유통기한이 △△월△△부터 △△월△△일 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’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유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⇒ 이번 고시 개정으로 ①판매화면에 제조연월일·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고, ②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③ 리퍼브 가구,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필수 표시항목 추가

□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구나 가전 제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해왔다.

* 가 구 온라인 거래액 : ('18) 3.1조원 → ('21) 5.4조원 (코로나19 확산 후 74%↑)
가전제품 온라인 거래액 : ('18) 17조원 → ('21) 30.1조원 (코로나19 확산 후 77%↑)

○ 특히,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나 미세하자로 반품된 가구나 전시상품 중 기능상 문제가 없는 가구를 손질·재포장하여 판매하는 ‘리퍼브 (refurbished, 재공급) 가구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,

○ 집 꾸미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, 매립형TV, 빌트인 (built-in) 세탁물 건조기와 같이 사업자가 소비자의 집에 방문해 직접 설치까지 해주는 ‘설치형 가전제품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왔다.

□ 공정위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, 관련된 상품의 품목별 필수 표시항목을 보완하였다.

① 리퍼브 가구의 경우, ㉠손질되어 재(再)공급(리퍼브)된 사유와 ㉡하자(瑕疵)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,

-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‘**전본주택 전시장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**’과 같이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예시 규정도 두었다.

② 아울러, 영상가전,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‘추가설치비용’을 추가함으로써, 소비자가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.

4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‘정보 표시지침’ 제시

□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증가하면서,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증가해왔다.

* 온라인쇼핑 거래액 : ('18) 113.3조원 → ('21) 187.1조원 (65%↑)

온라인 판매사업자 수 : ('18) 67만개사 → ('21) 111만개사 (67%↑)

○ 가령, 모든 종류의 방향제는 「화학제품안전법」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므로,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도 이 고시의 ‘생활화학제품’ 품목에 해당하는 필수정보인 ‘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’, ‘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이름’ 등을 표시해야 하나,

▶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‘차량용 방향제’를 그저 차량용 소품으로만 생각하여 이 고시의 ‘자동차용품’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.

- 이 경우 생활화학제품으로서 인증·허가를 받았는지 여부, 인체가 흡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.

□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추가하였다.

【 새롭게 추가된 정보표시 지침 (예시) 】

구분	품목명	주요 내용
상품 정보	자동차용품	차량용 방향제, 광택코팅제, 워셔액, 부동액 등은 ‘생활화학제품’으로 분류해야 함을 안내
	농수축산물	1** 등급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과 근내지방도(마블링)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함을 안내
	가공식품	원재료 함량정보 작성대상 및 표시방법 안내
	식품류 공통	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구 작성방법 안내
	생활화학제품	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명칭 작성방법 안내
거래조건 정보		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안내

□ 그 밖에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(식품표시광고법)」 개정으로 기존 ‘유통기한 표시제’가 ‘소비기한 표시제’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·가공식품·건강기능식품의 필수 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‘유통기한’이란 용어를 ‘소비기한’으로 수정하는 등,

- ▶ 개별 품목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제도나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 고시의 내용을 일부 수정·보완하였다.

2 향후계획

- 공정위는 “그동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경험을 토대로,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의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고시에 반영했다”며,
 -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담회(5.30) 등을 실시하여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, 그들의 의견도 능동적으로 청취했음을 강조했다.
- 아울러, 공정위는 “이미 예고한 대로 개정 고시는 ‘소비기한 표시제’와 같은 실물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에 함께 시행될 것”이라고 설명하며,
 - “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·기관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[별첨]

1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」 신·구조문 대비표
2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」 개정 전문